

전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66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6699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9 선고 2018가단519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최경율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구

변론종결 2021. 10. 14.

판결선고 2021. 11. 18.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9. 선고 2018가단519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피고 유한회사 B와 제1심피고 유한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8. 체결한 매매예약 및 제1심피고 C와 제1심피고 유한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제1심피고 유한회사 E에게,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피고 유한회사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등기소 2018. 2. 8. 접수 제5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제1심피고 C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등기소 2018. 1. 23. 접수 제32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제1심피고 유한회사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7.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 C',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유한회사 E'을 '제1심피고 C', '제1심피고 유한회사 B', '제1심피고 유한회사 E'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각주 2)항의 ‘단, 상기 토지는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단, 상기 토지는 이 사건 종친회의 명의신탁 재산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의 ‘같은 날 피고 D 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주었다.’를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8. 2. 14. 접수 제6659호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주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1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4차 이행각서를 작성한 이후 제1심피고 E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제4차 이행각서는 무효일 뿐 아니라, N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제1심피고 E 소유의 별지 제1, 3, 4,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실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는 제1심피고 E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을 갖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 29. 이후 제1심피고 E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4차 이행각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등 증거, 을 제21,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제1심피고 E 소유의 별지 제1, 3, 4,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제14102호로 청구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기입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등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 및 매매계약을 3회에 걸쳐 체결하였고, 자신 내지 N, O 명의로 총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영수증, 제4차 이행각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모두 2017. 12. 29. 작성되었고 이 중 이 사건 영수증 및 제4차 이행각서의 당사자는 모두 N이 아닌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와 제1심피고 E은 그 동안의 채권·채무 관계 내역을 숙의한 끝에 제1심피고 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최종적으로 1억 8,000만 원으로 정산·확정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 및 제4차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4차 이행각서의 실질적인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N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

별지